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3년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6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3
2. 출연 외 보조·융자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 신설	5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5264호】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5.
3. 회부연월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1.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3년-----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제1항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 최근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기상기술 발전, 데이터 기반 산업 확대 등으로 기상

1) 현재 제3차 기상산업진흥 수정 기본계획('23~'27)을 수립('23.3.6.)하여 이행 중
※ 추진경과: 제1차('11~'15) '10.12., 제2차('16~'20) '15.12., 제3차('21~'25) '20.12.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의 수립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정책환경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5년 단위 계획이 다소 경직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현행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제5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 관련 조정·보완의 유연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경제·기술·산업 분야의 기본계획²⁾은 통상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립주기를 단축할 경우 다른 분야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저하 및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립주기 단축의 실익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상법」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출연 외 보조·융자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상청장이 지급하는 연구비용 지급방식을 현행 ‘출연금’ 외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u>출연금으로</u> 지급할 수 있다.	② ----- ----- ----- <u>출연금·보조금으로</u> <u>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u> <u>자</u>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u>출연금</u> 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u>출연금</u> <u>·보조금·융자금</u> ----- ----- -----.

현행법 제9조제2항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출연금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기상사업 관련 연구개발(R&D)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왔으나, 정부의 한정적인 재원의 특성상 여러 연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에 ‘출연’ 외에도 ‘보조’와 ‘융자’를 추가하여 다양화하려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재 대부분의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에 부합하게 집행하면 추가적인 규제가 없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과정에서 재량적 이용이 제한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됨.

둘째, 융자금은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여 회수자금의 채용자 등을 통한 재원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는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과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서 기술개발역량 축적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순수 연구개발 단계까지 일률적으로 융자 방식

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현장 수요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셋째, OECD의 연구개발 통계·지표 작성 지침(Frascati Manual 등)에서도 용자와 같은 금융성 지원은 정부 R&D 예산지표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환이 면제되는 용자’ 등 일부에 한하여 포함하고 있음³⁾.

참고로, 개정안에서 개정 대상으로 언급한 같은 조 제3항은 2025년 3월 25일 개정(법률 제20848호)되어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서 이미 삭제되는 항이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행예정 법률 조문대비표]

현행	2026.3.26. 시행예정 법률 (법률 제20848호)	개정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생략)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p42)

4) 개정 주요내용: 기존 협약대상 연구개발기관을 현행법에 나열하던 것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u>출연금으로 지급</u>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 ----- --<u>출연금·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u>-----.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u>출연금</u>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 삭제 ></u>	③ ----- ----- -----<u>출연금·보조금·융자금</u>----- ----- ----- -----.

한편, 기상청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상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3		'24		'2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주요 R&D	91,514	88,981	71,514	69,168	111,415	109,227
일반 R&D	18,019	18,116	17,034	17,181	20,423	20,181
합계	109,533	107,097	88,548	86,349	131,838	129,408

※ 출처: 기상청 제출 자료 수정

문 의 처

02)6788-5542